

입법정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3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4
2. 풍수해보험법(개정).....	5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8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9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1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12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13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4
1.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 광주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16
3.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9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정 `21. 9. 7. 시행 `21. 9. 7.]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8]

■ 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감사인이 작성해야 하는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안 제3조 및 제4조)
-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감사인이 작성해야 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서식을 정함.
 - 2) 감사인은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에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안 제5조)
-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하도록 함.

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지방보조금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함.

풍수해보험법

2 [일부개정 `21. 6. 8. 시행 `21. 9. 9.]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044-205-535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2021년 4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가·공장(전국 가입 대상 61만 4,000개소)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만 9,628건으로 가입률이 3.2퍼센트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45만 1,750건으로 가입 대상 195만 가구 중 23퍼센트 정도로 가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일부개정 `21. 3. 9. 시행 `21. 9. 10.]

소관부서 :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 개정이유

조직적·계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감염병 정보 관리 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규정함(제7조).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2조 및 제81조).
- 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34조).
- 라.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제40조의6 신설).
- 마.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폐쇄 명령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49조).
- 바.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제2항 신설).
- 사.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함(제72조의2 신설).
- 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 또는 입원·치료·격리 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 전파 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제81조의2 신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 9. 14. 시행 `21. 9. 14.]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함. 또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보증금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나아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말소하고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1. 9. 14. 및 시행 `21. 9. 16.]

소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8

■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육성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268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가 각각 다른 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제6조의3 신설)

- 1)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의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 확대(제11조의4)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을 추가함.

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제15조 및 제16조)

- 1)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감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과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가 해당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 확대된 지원대상을 고려하도록 함.
- 2)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 주체와 국유·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과 핵심 전략산업 투자 기업을 추가함.

라. 대외지급수단 사용 관련 규제 완화(제19조)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함.

마.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제28조)

법률 개정으로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 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바. 용지의 종류에 복합용지 추가(별표 1)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토지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용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하고, 복합용지의 가격기준은 해당 용지 내 각 시설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도록 함.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 6. 15. 시행 `21. 9. 16.]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부처의 공공디자인 등록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17,154건의 공공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만들고 있지만, 공공디자인의 홍보예산의 중복 투자, 기존에 제작된 공공디자인의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공공디자인의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시책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일부개정 `21. 3. 16. 시행 `21. 9. 17.]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그 업무영역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의 유지관리대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밀안전진단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바,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8 [일부개정 `21. 3. 23. 시행 `21. 9. 24.]

소관부서 :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26

■ 개정이유

- 현행법은 의학·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대학 및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입학 장벽이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져 가고 있음.
-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며,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일 `21. 8. 23.]

■ 제정이유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민간자원의 자발적인 초동조치를 독려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민간자원의 소방활동 기본사항(안 제4조)
- 나. 소방활동에 종사한 인적자원 보상(안 제5조)
- 다.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자원 보상(안 제6조)
- 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준용(안 제7조)
- 마. 중복보상 금지(안 제8조)

2

광주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본회의 의결일 `21. 9 10.]

■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소셜미디어의 운영: 시장은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소셜미디어 활성화: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을 널리 알리며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 및 시책의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위촉: 시장은 소통기반 확대 및 광주광역시 홍보를 위하여 거주지역·성별·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지원: 시장은 소셜미디어기자단의 효율적 운영

과 원활한 취재 활동에 필요한 원고료와 경비 등을 소셜미디어기
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대학생 홍보단의 운영: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포상 및 지원: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일 `21. 8. 17.]

제정이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준을 군계획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의견21-0242] 경상남도 함양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준을 군계획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나 별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참조)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축 허가 등을 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건축물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27. 의견제시 21-0146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공작물의 설치(각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제1호) 등의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제1항),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본문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내 입지 조건, 폐기물재활용시설등이 주변 환경 및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폐기물재활용시설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폐기물재활용시설등의 이격거리에 관한 내용을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의3.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바. (생략)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 20. (생략)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6. (생략)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 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10. (생략)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4. (생략)

2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8조의2 등 관련)

[의견21-0307] 전라남도 목포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가.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서 목포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여 이러한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나 관리수탁자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장등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함)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등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조례에서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제1호),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제2호) 및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제3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등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등이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이하 “견인”이라 함)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등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자동차별로 제한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고(제10조제1항제2호), 이러한 제한조치가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시장등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그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제1호),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제2호) 및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자동차의 견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과는 달리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거나 주차시간 제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을 규정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은 대도시의 “노상주차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장기불법주차,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주차, 주차구역 내에서 자동차 수리·세차·영업행위 등의 불법행위 등이 성행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로 개정 당시 신설된 것이고, 이후 노상주차장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동차에 대한 견인 근거(제8조의2제2항)와 노외주차장에 대해 같은 법 제8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제15조제2항)이 순차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이 노외주차장의 경우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 주차위반이나 주차요금 미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장법」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견인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조례에서 목포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주차가 가능한 최장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을 넘으면 주차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간 경과 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략)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자진 폐원한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32조 등 관련)

[의견21-0280] 경기도 여주시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자진 폐원한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해 자진 폐원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생계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하 “생계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아동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시장 등이 인가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보육 수요, 공립어린이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같은 항 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되,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원아 모집이 곤란함을 이유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원에 대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다른 폐업자나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귀 시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

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지역 주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제9조 관련]

[의견21-0261] 전라남도

■ 질의요지

지역 주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이하 “공익소송”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이하 “전라남

도조례안”이라 한다)은 공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소송’을 도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가목),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나목)에 관한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권리, 의무 등 법률 관계를 법원에서 확정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등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의 목적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익(公益)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 보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송물의 내용과 무관하게 소송이 중요한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다거나 소송 결과가 다수 도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조례안 제9조에서는 비용 지원 대상 소송을 민사소송(제1호)과 형사소송(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일방당사자와 형사소송의 피고인에 대해 소송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소송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사소송의 일방을 공익 보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 그 단계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공익 보호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설령 전라남도조례안이 도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

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성격,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영역에서 공익 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국가 차원의 법률구조 수단이나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소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

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

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